

- 지하공동구관리민간위탁에 관한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년 12월 1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1년 12월 3일

라. 상정일자 : 2001년 12월 7일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나. 제안이유

- 국가 기간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지하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필요성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도모
- 정부합동점검 및 감사원 확인 시 전담조직 설치 지시
- 인력증원 억제 방침에 의거 전담조직 설치 불가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

라. 수탁기관

○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완 진

- 본 동의(안)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구미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 지하공동구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재의 관리업무는 해당 부서의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시민생활의 안녕과 직결되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자체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전담조직 설치에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제3항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의 관리목적에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리 담당자의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관리 능력함양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